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56553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 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변 론 종 결 2016. 3. 9.
판 결 선 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05,900,92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704,900,923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각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40,635,91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139,635,919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각 2016. 4.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8,809,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204,858,24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1,100,834,579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002,750,6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44,927,35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476,860,016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467,067,3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81,618,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나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1,122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나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2006. 11. 22. ~ 2007. 11. 21.(1년차)	554,707,200	
2	2006. 11. 22. ~ 2008. 11. 21.(2년차)	554,707,200	
3	2006. 11. 22. ~ 2009. 11. 21.(3년차)	832,060,800	
4	2006. 11. 22. ~ 2011. 11. 21.(5년차)	416,030,400	
5	2006. 11. 22. ~ 2016. 11. 21.(10년차)	416,030,40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2. 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250,087,955	590,527,733	840,615,688	118,613,633	167,462,662	150,581,753	243,896,068	267,444,545	1,788,614,349
전유부분	55,495,946	127,774,132	183,270,078	72,870,335	57,630,237	6,617,081	5,105,328	2,445,529	327,938,588
합계	305,583,901	718,301,865	1,023,885,766	191,483,968	225,092,899	157,198,834	249,001,396	269,890,074	2,116,552,937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22세대 중 1,03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2014. 8. 13.부터 2015. 3.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2.75%(=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면적 합계 76,228.65㎡ (= 별지 3. 동의세대 집계표에 기재된 세대의 면적 합계 48,793.08㎡ + 별지 4. 미동의세대 집계표에 기재된 세대의 면적 합계 27,435.57㎡) ÷ 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 면적 합계 82,191.6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3. 동의세대 집계표 및 별지 4. 미동의세대 집계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305,040,5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8. 4.자 피고측 1차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2015. 10. 7.자 피고측 2차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등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715,745,662원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489,112,579원 합계 2,204,858,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자인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채권양도비율과 관계없이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과 관련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인 1,126,545,408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되, 다만 피고 B과 부진정연대로 책임질 범위는 사용검사 후 하자 중 원고가 채권양도를 받은 비율에 상당하는 1,044,927,353원에 한정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1,044,927,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과 별도로 81,618,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존재 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계단실 PD 내부 조적벽체 미장을 누락한 하자(공용 45)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31,647,179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단실 PD 내부 조적벽체에 미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31,647,179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8. 4.자 피고측 1차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및 기타지시서에는 계단실 PD 내부 조적벽체의 마감을 미장으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통상 계단실 PD 내부는 입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점, 계단실 PD 내부 조적벽체에 미장을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계단실 PD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경우 미장을 시공하기 어

려운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단실 PD 내부 조적벽체에 미장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천장 내에 후렉시블 전선관이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전유 26)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13,235,112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천장 내에 후렉시블 전선관이 시공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3,235,112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8. 4.자 피고측 1차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2015. 10. 7.자 피고측 2차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및 기타지시서에는 세대 천장 내 후렉시블 전선관의 시공에 대해 별도로 지정한 내용이 없고, 대한전기협회에서 제정한 내선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천장 내에 후렉시블 전선관이 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B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벽체 타일 뒷채움이 불량(전유 27)한바, 이는 미시공 하자로서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29,100,540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세대 벽

타일 뒷채움 불량이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그 보수비용으로 29,100,540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8. 4.자 피고측 1차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2015. 10. 7.자 피고측 2차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세대를 선정한 후 무작위로 위치를 선정하여 타일 한 장을 떼어낸 후 타일 뒷채움 정도를 확인하고, 평형별로 청음조사를 한 후 이를 가지고 전체 세대의 벽체 타일에 뒷채움 불량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29,100,540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표본추출 정도만으로는 전체 세대를 대표할 정도의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벽체 타일 뒷채움 불량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29,100,540원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 건식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하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전부를 피고의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8. 4.자 피고측 1차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아니한 점,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이 심화되어 그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B이 균열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은 아파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에 관한 일응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구속력 있는 법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콘크리트 시공의 기술적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균열 발생에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폭 0.3mm 미만의 균열도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그 하자보수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개별 하자에 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의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5. 8. 4.자 피고측 1차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2015. 10. 7.자 피고측 2차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위 주장은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

이 이유 없거나 일부 이유 있다.

하자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12] 지하주차장 바닥/벽체/천정 균열	1,2년차 균열하자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것이다. 지하주차장 바닥 0.3mm 미만 균열은 마감재인 무근콘크리트에 발생한 건조수축 균열에 불과하고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진입로와 주차장 바닥 표면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균열과 박리 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0.3mm 미만 균열은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므로, 지하주차장 바닥 0.3mm 미만 균열의 보수는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수비는 3,397,791원으로 피고 B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먼저 지하주차장 바닥의 균열에 관하여 보면, 지하주차장 바닥의 균열의 경우 피고 B이 2013. 11. 29. 하자보수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0.3mm 미만 균열의 보수 방법에 관하여 보면, 0.3mm 미만 균열에 대하여 도색만으로 균열이 보수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 중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인다.
[공용 추가 1] 아파트 계단실 벽체 및 천정 미장두께 부족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 벽체 몰탈 부족 시공은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재료의 양에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한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부족시공 자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8년 가까이 몰탈 두께 부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인 10,785,164원으로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시방서에 벽체 미장 두께가 20mm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도 벽체 미장 두께가 18mm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시공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므로 그 공사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B의 주장처럼 위 공사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함에 있어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만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용 48] 계단실 바닥 테라조판 균열	준공 후 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균열 여부를 감정한 점, 위 테라조판 균열은 시공상 하자와 사용상의 과실 등 유지관리의 하자가 같이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 바닥 테라조판 균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시공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나,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때 균열발생 부위에 특수바닥강화제로 보수하는 비용인 3,912,766원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용 124] 조정수 미식재 [공용 123][공용 126] 조정수 고사, 절단	하자종결합의에 따라 식재한 53주 중 고사된 수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고사된 수목이나 미식재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미식재 및 고사목에 대한 재식재 비용에서 위 53주 식재비용 29,362,91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현재 전부 별목되었거나 밀동만 남은 수목의 경우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고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절단목에 대한 하자보수비 114,704,954원은 피고의 담보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단목이 전부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여야 한다.	피고 B이 하자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53주를 추가로 식재하기는 하였으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조정수가 고사 또는 미식재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일반적으로 조정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 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 B의 시공상 잘못도 조정수의 고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 B이 53주를 추가로 식재한 이후 받은 하자처리완료확인서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고사목, 미식재 등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이 일부 조정하자를 보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조정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 항목을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감정 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상 피고 B의 하자보수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상 부주의 역시 위 하자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공용 165] 바닥 액체방수 [공용 166] 벽체 액체방수	사용검사도면대로 액체방수를 시공한 정상시공이므로 하자가 아니다.	사용검사도면에 액체방수 2차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한 것이므로 하자라고 할 것이다.

[전유 4] 마루들뜸 [전유 7] 바닥타일 들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	이 부분 하자는 피고 B이 2013. 12. 13.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부분 각 하자는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서 주택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전유추가 2] 단위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보온 두께 오시공 [전유추가 3] 단위세대 보일러 하부배관 보온 두께 오시공 [전유추가 4] 단위세대 급수배관 보온 두께 오시공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배관보온 두께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시방서의 규정과 달리 시공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를 변경시공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시방서에 명시된 보온관 두께와 달리 시공되었으므로 하자라고 할 것이다.
[전유 9] 거울변색	거울변색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고,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거울변색은 사용상의 과실로도 발생한 것이므로 저렴한 보수비용으로 유사한 보수효과를 낼 수 있는 '부식된 거울 테두리에 방습시트'로 보수하는 비용인 14,005,032원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욕실은 항상 물과 세제를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거울이 쉽게 변색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여야 하고, 욕실에 설치된 거울의 유리판 뒷면에는 은을 얇게 입히고 그 은막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처리를 하는데, 유리판 뒷면에 습기나 세제가 침투하여 거울 가장자리에서 변색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을 투입하여 동일한 보수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의 보수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부식된 거울 테두리에 방습시트로 보수하는 것이 유리를 재

		시공하는 것과 유사한 보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변색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하자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감정인이 거울 재시공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약 8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점, 감정인도 거울변색은 전부 시공상의 잘못만이 아닌 사용상 잘못으로 발생된 부분도 존재한다고 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전유 12] 목조천장틀 달대 간격 @459 간격 준수불량	현재까지 목조천장틀 달대 간격이 세밀하지 않음으로 인한 천장처짐 등의 기능상의 문제나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한 세대는 없고, 이는 단지 달대 수량을 변경하여 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하자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부족하게 시공된 달대의 재료비 6,677,182원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세대 내 목조천장틀 달대 간격을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으로서, 아직 달대 축소시공으로 인한 천장 처짐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구조물의 내구연한 내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공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천장 처짐 발생 우려로 인해 달대 부족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시공하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유 15] 부부욕실 바닥 신발 걸림	이 사건 감정인은 사용검사도면 및 기타 지시서 어디에도 지시하고 있지 않은 50mm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미달된 욕실 바닥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는 그 자체로 부당하고, 이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욕실 단차가 부족한 세대에 대한 방수매트(갈판) 설치비용인 7,558,720원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욕실 문턱과 타일 바닥면의 단차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입주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욕실 문턱의 높이를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발이 걸릴 정도로 욕실 문턱을 시공한 것은 하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욕실 바닥 높이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신발 걸림 현상은 생활상 불편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바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법은 개선되는 편의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을 투입하여

		동일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의 보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욕실 바닥에 방수매트(깔판)를 설치함으로써 바닥 철거 후 타일을 재시공하는 것과 유사한 보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방수매트(깔판)설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수매트(깔판)설치비용인 7,558,720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전유 18] 싱크대 하부 마감 누락	이 사건 아파트의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싱크대 하부에 마감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라고 할 수 없고, 하자라고 판단하더라도 싱크대 하부를 에폭시 페인트 코팅으로 시공할 경우의 보수비 39,684,822원으로 담보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멘트 몰탈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검사도면에 주방바닥 마감은 합판마루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나, 싱크대 하부에 에폭시 페인트 코팅을 하는 경우 싱크대 하부에 합판마루로 시공하는 방법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이 소요되면서 유사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보수방법으로는 에폭시 페인트 코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39,684,822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다. 하자보수종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12. 16.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시공을 비롯하여 21가지 하자보수 및 단지개선공사를 이행할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 B이 위 합의에 따른 하자보수 및 단지개선공사를 모두 이행하여 2013. 12. 16.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3년차 이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651세대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종결합의에 대하여 위임 및 동의하였으므로, 위 651세대에 대한 전유부분에 관한 3년차 이하 하자보수비에 대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및 공용부분의 3년차 이하 하자보수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위 651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651세대의 하자담보청구권 포기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6. 11. 7. 대통령령 제1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참조).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신 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종결합의의 효력이 구분소유자가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종결합의 당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5625 판결 등 참조).

(3) 주택법에 의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다. 입주자들의 위임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의 결의로써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참조).

(4)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 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697세대(이하 '이 사건 동의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 및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중 이 사건 동의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6.62%이다.

위임 및 동의서

상기 위임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A 아파트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주택법상 1, 2, 3년차 하자 항목에 대한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와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1, 2, 3년차 하자보수 종결합의서'에 대한 합의 체결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대하여 동 아파트 단지의 대표권과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위임(구분소유자들의 청구권 포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서명합니다.

(3) 원고는 2011. 10.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1, 2, 3년차 하자보수 종결합의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종결합의에 대한 주민동의가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3년차 하자종결 협의사항으로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구성원 8명 전원이 동의하여 의결하였고, 2011. 10. 18.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1, 2, 3년차 하자보수 종결합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2011. 12. 15.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구성원 8명 중 5명 참석)하여 2011. 12. 16.에 1, 2, 3년차 하자보수 종결합의와 관련하여 최종합

의서를 작성하되(최종합의서는 위 2011. 12. 15.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다) 위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하기로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여 결의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1. 1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법상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 종결합의(이하 '이 사건 종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등부 2011년 제9824호로 위 합의서에 대하여 인증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시공을 비롯하여 21가지의 하자보수 및 단지개선공사 요청사항이 기재된 목록이 첨부되었다.

합의서

갑 : 원고

을 : 피고 B

갑과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을의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하자보수 및 그에 대한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이 본 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갑은 A아파트 전세대 구분소유자 및 이에 관계되는 입주자 전원으로부터 본 합의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내부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본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A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의 위임 및 동의서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단 갑이 요청할 경우 위 위임 및 동의서의 제출은 1회에 한하여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본 합의서상의 을의 의무 이행의 착수 또는 완료 기한 등은 그 연장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 또는 연기되며 그에 따른 을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을이 첨부된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1, 2,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을 받는 하자 부분에 대한 사업 주체의 보수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즉시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상의 1, 2,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의 적용을 받는 A아파트의 하자 부분에 대한 을의 하자보수 책임은 모두 소멸하고 그에 대한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책임 또한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갑 및 A아파트의 전 입주자와 그 구분소유자들은 A아파트에 대한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본 합의서 작성, 체결 전에 을의 콜센터에 유선 접수되거나 을이 문서로써 접수한 하자(주택법령상 연차별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을에게 접수된 하자만을 의미한다) 중 보수가 미완료된 전유부분의 하자는 제외한다.

4. 갑은 을이 첨부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입주자의 80% 이상이 작성한 주택법시행규칙 서식 34의3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한 주택법시행규칙 서식 34의3의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각 작성, 서명 날인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상기 기한까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을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 을이 본 합의서에 따라 첨부한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소급하여 A아파트의 주택법상 1, 2,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을 받는 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갑 및 A아파트의 입주자들과 그 구분소유자들이 인락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갑 및 A아파트 입주자들과 그 구분소유자들은 조건없이 이를 인락한다. 단 전체 구분소유자 중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종료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인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본 합의서 작성 당일 을은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접수된 전유부분 1, 2, 3년차 하자처리완료기록 및 미처리기록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본 합의 체결 전까지 을이 콜센터 및 공문을 통해 접수한 전유부분의 하자(주택법령상 연차별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을에게 접수된 하자만을 의미한다) 중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는 을이 보수 책임을 진다.

5. 을이 첨부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제4항의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 완료하여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갑은 피고 공사가 발행한 A아파트의 1, 2, 3년차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을에게 조건없이 인도하기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전유부분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으로써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이 본 합의를 체결한 후 갑이 제1항에 따른 위임 및 동의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방서 및 각 공종별 작업계획서를 통보하고 시방서 및 작업계획에 의하여 첨부 하자사항에 대한 공사를 착수, 진행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한다.

③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는 갑과 을이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상 조율한 내용으로 관리주체

와 동대표 1인 이상의 관리 감독하에 실시하고 완료확인서는 갑이 공사항목별로 발급하여 각 항목별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④ 침부의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완료 확인일로부터 1년이며, 을은 동 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본 합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각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및 동의 내용 또는 절차 등에 하자 또는 흠결 등이 있는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하며, 본 합의에 따라 을이 침부의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갑이 을 및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함과 동시에 침부의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 중 단지개선 요청사항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 B은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로부터 2013. 12.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 2, 3년차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및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결합의 당시 약정한 피고 B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하자담보추급권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종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의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포기하기로 한 1, 2, 3년차 하자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자보수청구권 포기 합의에 동의한다는 개별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

는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 B이 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의세대가 제출한 위 위임 및 동의서는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자신들의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종결합의에 관한 권한을 원고의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종결합의를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종결합의에서 정한 피고 B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임 및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동의세대의 피고 B에 대한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세대가 위 위임 및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청구권과 관련한 합의를 하는 데에 동의하고 입주자들이 주택법 제46조에 기하여 피고 B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지,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위 위임 및 동의서 작성·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의세대는 여전히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동의세대가 작성한 위임 및 동의서의 문언상 "주택법상 1, 2, 3년차 하자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합의체결 및 하자보수종료확인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언은 단지 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세대로부터 위 위임 및 동의서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보낸 'A아파트 1, 2, 3년차 하자종결협약에 관한 안내', '1~3년차 하자종결에 따른 세대 동의서작성 협조요청'을 보더라도 단지 '1, 2, 3년차 하자'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주택법상 1, 2, 3년차 하자'라고 구분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종결합의를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종결합의를 통해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만 포기하고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은 유보하기로 하였던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의세대가 작성한 위임 및 동의서는 주택법상 1, 2, 3년차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상의 권리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그 처분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구성원인 동대표들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종결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결합의 전날에 열린 원고의 2011. 12. 15.자 회의에서 원고의 구성원 8명 중 5명이 출석하여 5명 전원이 이 사건 합의서 내용대로 피고 B과 1, 2, 3년차 하자에 대해 종결협약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공증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결합의에 의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하

자보수청구권포기는 원고의 결의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인 하자에 관한 보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부종하는 권리인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보수공사가 부실하여 보수하기로 한 하자가 적절히 보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B이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결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보수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공종별로 원고가 요구하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로부터 2013. 12.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 2, 3년차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하자 및 단지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완료 확인일로부터 1년이며, 피고 B은 동 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한 보수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 2, 3년차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한 이상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또 다른 하자보수책임이 문제될지언정 위 보수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 체이자 시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한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가 1,788,614,349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 92.75%인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발생한 전유부분 하자의 보수비가 305,040,53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의 보수비는 1,963,980,339원(= 1,788,614,349원 $\times$ 0.9275 + 305,040,531원)이다.

2) 이 사건 종결합의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한 부분의 하자보수비

이 사건 동의세대의 이 사건 종결합의로 인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한 부분의 하자보수비는 아래와 같이 352,178,492원(= 259,222,244원 + 92,956,248원)이다.

가) 공용부분 : 259,222,244원 [= 공용부분에 관한 1, 2, 3년차 하자보수비 436,658,048원(= 118,613,633원 + 167,462,662원 + 150,581,753원) $\times$ 이 사건 동의세대의 비율 48,793.08m²/82,191.60m²]

나) 전유부분 : 92,956,248원(별지 3. 동의세대 집계표에 기재된 1, 2, 3년차 하자보수비 합계액 = 50,407,004원 + 38,301,734원 + 4,247,510원)

3) 소결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한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종결합의로 소멸되지 않은 1,611,801,847원(= 1,963,980,339원 - 352,178,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피고 B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 B의 공사완료 전 원고가 소를 제기할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결합의를 무효로 보아 3년차 이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위 합의서 제7조에서 정한 '피고 B의 공사완료 전 원고의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종결합의는 무효로 되고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개선공사를 위해 지출한 498,994,25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였던 주식회사 코오롱관리공사와의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33,326,401원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이 역시 원고는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원 합계 532,320,650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에서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피고 B이 침부의 하자 및 단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함과 동시에 침부의 하자 및 단지 개선 요청사항 중 단지개선 요청사항

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의 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종결합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하자 및 단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피고 B의 공사완료 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종결합의 이후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하자 및 단지 개선 요청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로부터 2013. 12.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 2, 3년차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로써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자 및 단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피고 B이 첨부된 하자 및 단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종결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에게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6. 12. 5.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8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환경적 요인 또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른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B이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등 피고 B이 하자보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앞에서 개별 하자에 대한 주장을 판단하면서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 사항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 대와 관련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805,900,923원(= 1,611,801,847원 × 0.5)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에게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14.부터, 704,900,923원(= 805,900,923원 -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게 2015.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9.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남아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증금액의 범위 및 각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인 하자에 관한 책임이 소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 10년인 하자에 관하여만 보증책임을 진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의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각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5, 10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모두 그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5, 10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4. 라항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는바,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보증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책임에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 역시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증 금액 범위 내에서 위 책임제한을 적용한 5,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259,445,735원 $\{=(5\text{년차 하자보수비 } 249,001,396\text{원} + 10\text{년차 하자보수비 } 269,890,074\text{원}) \times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240,635,919원 $\{=(249,001,396\text{원} + 269,890,074\text{원}) \times 0.5 \times \text{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 0.92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240,635,91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27.부터, 139,635,919원 $(= 240,635,919\text{원} - 101,000,000\text{원})$ 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에게 2015.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9.부터 각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지급의무와는 별개로 18,809,816원 $(= 259,445,735\text{원} - 240,635,919\text{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에게 2015.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9.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라옥

판사 이원호

판사 진화원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단위 : 원]

하 자 목 록	중요도	보수비 산정 방법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마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합 계			250,087,955	590,527,733	118,613,633	167,462,662	150,581,753	243,896,068	267,444,545	1,788,614,349
나주										-
공용부-1										-
공용1) 외벽균열										-
1-1 0.3mm 미만 균열 (10년차 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53,006,208	53,006,208
1-2 0.3mm 이상 균열 (10년차 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4,447,671	4,447,671
1-3 습식균열 (10년차 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101,847	101,847
1-4 망상균열 (10년차 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115,098	115,098
1-5 0.3mm 미만 균열 (3년차 비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77,115,945			77,115,945
1-6 0.3mm 이상 균열 (3년차 비내력벽, 고소할증	중요	보수비					7,401,473			7,401,473

42.27%)										
1-7 습식균열 (3년차 비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43,644			43,644
1-8 망상균열 (3년차 비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495,590			495,590
공용2) 층간균열										-
2-1 0.3mm 미만 균열 (10년차 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125,122,089	125,122,089
2-2 0.3mm 이상 균열 (10년차 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41,256,230	41,256,230
2-3 0.3mm 미만 균열 (3년차 비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34,639,794			34,639,794
2-4 0.3mm 이상 균열 (3년차 비내력벽,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4,200,308			4,200,308
2-7 0.3mm 미만 균열 (옥탑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4,331,789	4,331,789
2-8 0.3mm 이상 균열 (옥탑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369,194	369,194
공용3) 벽체 철근 노출										-
3-1 외벽 철근 노출 (3년차, 고소할증 42.27%)	중요	보수비					12,086,680			12,086,680
3-2 계단실 철근 노출 (3년차)	중요	보수비					605,476			605,476
3-3 옥탑 철근 노출 (3년차)	중요	보수비					1,331,033			1,331,033

3-4 뿔뿔실 철근 노출 (3년차)	중요	보수비					29,770			29,770
공용4) 계단실 벽체 균열										-
4-1 0.3mm 미만 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2,304,899	2,304,899
4-2 누수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40,401	40,401
4-3 층간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1,208,284	1,208,284
4-4 천정 0.3mm 미만 균열 (5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397,069		397,069
공용5) 옥탑 벽체 균열										-
5-1 0.3mm 미만 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2,266,136	2,266,136
5-2 0.3mm 이상 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1,385,411	1,385,411
5-3 누수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127,933	127,933
5-4 망상균열 (10년차 내력벽)	중요	보수비							1,994,415	1,994,415
공용6) 옥탑 뿔뿔 바닥/벽체/천정균열										-
6-1 0.3mm 미만	중요	보수비							5,052,377	5,052,377

[illegible]

[illegible]

10-1 바닥 0.3mm 미만 균열		보수비			25,301					25,301
10-2 바닥 0.3mm 이상 균열		보수비			262,686					262,686
10-3 벽체 0.3mm 미만 균열 (10년차)	중요	보수비							52,125	52,125
10-4 벽체 0.3mm 이상 균열 (블록 2년차)		보수비				735,915				735,915
10-5 천정 0.3mm 미만 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52,528		52,528
10-6 천정 0.3mm 이상 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463,937		463,937
10-7 천정 누수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326,608		326,608
공용11) 지하 저수조실 바닥/벽체/천정균열										-
11-1 벽 0.3mm 미만 균열(10년차)	중요	보수비							1,058,894	1,058,894
11-2 벽 0.3mm 이상 균열 (10년차)	중요	보수비							3,473,169	3,473,169
11-3 벽 누수균열 (10년차)	중요	보수비							2,955,112	2,955,112
11-4 천정 0.3mm 미만 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2,562,117		2,562,117
11-5 천정 누수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1,414,094		1,414,094

공용12) 지하주차장 바닥/벽체/천정균열										-
12-5 벽체 0.3mm 미만 균열 (10년차)	중요	보수비							7,815,490	7,815,490
12-6 벽체 0.3mm 미만 균열 (블록 2년차)		보수비				16,527,474				16,527,474
12-7 벽체 0.3mm 이상 균열 (블록 2년차)		보수비				3,672,764				3,672,764
12-8 벽체 누수균열 (10년차)	중요	보수비							2,203,559	2,203,559
12-9 천정 0.3mm 미만 균열 (5년차 천정)	중요	보수비						135,872,240		135,872,240
12-10 천정 0.3mm 미만 균열 (5년차 보)	중요	보수비						51,071,516		51,071,516
12-11 천정 누수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43,718,496		43,718,496
12-12 램프 벽체 0.3mm 미만 균열(10년차)	중요	보수비							2,892,862	2,892,862
12-13 램프 벽체 0.3mm 이상 균열(10년차)	중요	보수비							113,088	113,088
12-14 램프 벽체 누수 균열(10년차)	중요	보수비							226,182	226,182
12-15 램프 천정 0.3mm 미만 균열 (5년차)	중요	보수비						4,580,545		4,580,545
12-16 램프 천정 누수 균열(5년차)	중요	보수비						701,477		701,477

12-17 램프 보 0.3mm 미만 균열(5년차)	중요	보수비						1,704,411		1,704,411
공용13)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 균열		보수비			5,704,452					5,704,452
공용14) L형측구 열화(재료불량)		보수비				2,843,557				2,843,557
공용15) L형측구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보수비		996,088						996,088
공용16) 지하 진입용 승강기 장애인 램프 급경사(1/8기준 현격하게 초과)		보수비		1,453,051						1,453,051
공용17) 동퍼트 트렌치 구배불량		보수비		1,336,397						1,336,397
공용18) 옥탑 벽체 콘크리트 곰보현상		보수비			91,168					91,168
공용19) 기계실 트렌치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보수비		386,676						386,676
공용20) 저수조실 트렌치 시공불량		보수비		480,158						480,158
공용21) 트렌치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보수비		6,641,657						6,641,657
공용22) 램프 경사도 기준초과 (경사도 1/6 초과)										-
공용23) 램프 경사 불량으로 인한 차량 하부 긁힘										-
공용24) 단차 부위 램프 바닥 콘크리트 열화		보수비			1,879,487					1,879,487

공용25) 105동 옆 벽천 심한 백화현상		보수비			11,923,580					11,923,580
공용26) 관리동 벽체 무너코트 프라이머 누락으로 인한 탈락현상		보수비			99,541					99,541
공용27) 관리동 앞 전통정원 바닥 화강석 변색		보수비			406,744					406,744
공용28) 관리동 주출입구 강화도어 FIX 유리 부분 폭 축소시공		차액		172,887						172,887
공용29) 농구장 바닥 우레탄마모		보수비			484,432					484,432
공용30) 도로 차선 도색 불량										-
공용31) 문조 부착 글자 변형		보수비			7,866					7,866
공용32) 매트맨턴장 바닥 우레탄 부풀어오름 및 파손		보수비			1,036,028					1,036,028
공용33) 주민운동시설 바닥 도장 불량		보수비			277,469					277,469
공용34) 중앙광장 바닥 화강석 변색(물먹음)		보수비			819,573					819,573
공용35) 중앙광장 원형계단 화강석 변색(물먹음)		보수비			1,335,604					1,335,604
공용36) 지하 진입용 승강기 강관파이프 구조체 부식		보수비			3,531					3,531
공용37) 뽕룸 상부 환기구 목재 마감변형		보수비			1,758,848					1,758,848

공용38) 1층 계단실 마천석 질레반이 백화		보수비			7,710,652					7,710,652
공용39) 1층 계단실 출입구 상단 천정접합부 균열		보수비			895,826					895,826
공용40) 1층 계단실 화강석 두께 20mm사용(발을 딛는 부분은 30T적용)										-
공용41) EV홀 바닥 석재 들뜸		보수비			101,172					101,172
공용42) EV홀 층 표지판 탈락		보수비			41,688					41,688
공용43) EV홀 층 표지판 파손		보수비			5,951					5,951
공용44) 계단 바닥 테라조판 두께 20mm사용										-
공용46) 계단실 질레반이 도장 불량		보수비			47,114					47,114
공용47) 계단실 계단 테라조판 벽체와 접합부 처리불량		보수비			2,072,019					2,072,019
공용48) 계단실 바닥 테라조판 균열		보수비			22,166,102					22,166,102
공용49) 계단실 벽체 도장불량		보수비			1,164,730					1,164,730
공용50) 계단실 스텐 난간 부식		보수비			64,744					64,744
공용51) 계단실 프로젝트 창호 유리변색(수분침투)		보수비			239,739					239,739

[illegible]

공용65) 피티층 계단실 바닥 테라조판 줄눈백화		보수비			581,686					581,686
공용66) 기계실/전기실/발전기 실 걸레받이 도장 불량		보수비			145,352					145,352
공용67) 지하저수조실 저수조 내 사다리 부식		보수비			33,487					33,487
공용68) 기둥코너 보호대 불량		보수비			31,920					31,920
공용69) 램프 하단 트렌치 시공불량으로 인한 들쭉거림 및 파손		보수비	758,635							758,635
공용70) 바닥 마감재 탈락 및 변색		보수비			1,850,513					1,850,513
공용71) 바닥 신축줄눈 코킹누락										-
공용72) 벽체 배수관 오염		보수비			3,226,122					3,226,122
공용73) 지붕 텍산 코킹 들뜸		보수비			35,823					35,823
공용74) 지붕 철제 후레이م 녹발생		보수비			12,664					12,664
공용75) 케이블트레이 벽체 관통부 방화충진 누락		보수비				88,493				88,493
공용76) 지하 골프연습장 덕트 관통부 방화충진 누락	중요	보수비					665,215			665,215
공용77) 지하 골프연습장 천정 누수	중요	보수비					399,613			399,613

공용78) 옥상 우레탄 방수 불량(두께부족)		차액		3,048,523						3,048,523
공용79) 지하주차장 벽체 배수판 후면 누수	중요	보수비					3,142,814			3,142,814
공용80) 지하2층 바닥 집수정 1개소, 끊임없는 침투수 유출										-
공용81) 관리동 인입 급수관 수격작용으로 인한 소음 심함		보수비				216,130				216,130
공용82) 관리동 가스 공급 밸브 부식		보수비				2,618				2,618
공용83) 아파트 가스 공급 밸브 부식		보수비				136,461				136,461
공용84) 지붕 무동력흡출기 위치 변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보수비		8,811,337						8,811,337
공용85) 지붕 무동력흡출기 규격 변경 (지름600-지름450)		차액		96,109						96,109
공용86) 기계실 급수관 하부 행거 미설치로 인한 신축이음부 손상		보수비				253,757				253,757
공용87) 기계실 펌프류 부식		보수비				82,017				82,017
공용88) 저수조실 물탱크 조립용 연결철물 부식		보수비				2,300,710				2,300,710
공용89) 저수조실 물탱크 사다리 등받이 누락		보수비	995,317							995,317
공용90) 저수조실 진입 사다리 누락		보수비	135,044							135,044

[illegible]

공용104) 조정등 미점등		보수비			1,981,639					1,981,639
공용105) 옥탑 뒤편 내 치외접속단자함 내 우수유입		보수비				204,547				204,547
공용106) 옥탑 뒤편 내 피외접속단자함 커버 불량		보수비				121,552				121,552
공용107) EV홀 천정 센서등 다수 작동 불량		보수비			542,286					542,286
공용108) 형광등 점등불량 다수										-
공용109) 케이블 오염 (흙탕물 빠진듯)		보수비			365,778					365,778
공용110) 관리동 옆 어린이 놀이시설 난간 미설치로 인한 낙하사고		보수비		15,122						15,122
공용111) 목재 등의자 도장 탈락		보수비			225,338					225,338
공용112) 목재 등의자 철물 부식		보수비			31,296					31,296
공용113) 방부목 적용 조정시설물 방부목 탈색		보수비			89,969					89,969
공용114) 방음벽 방부목 푸른곰팡이 발생		보수비			14,567,240					14,567,240
공용115) 보도 가로등 기울어짐		보수비			554,929					554,929
공용116) 보도 가로등 기초 연결볼트 부식		보수비			10,928					10,928

공용117) 사각파고라 지붕 마감재 부식		보수비			93,770					93,770
공용118) 쓰레기 집적소 시설물 지붕 부식		보수비			149,823					149,823
공용119) 안내판 부식		보수비			32,800					32,800
공용120) 자전거 보관 시설물 지붕 부식		보수비			77,640					77,640
공용121) 조경 조명 시설 녹발생		보수비			32,800					32,800
공용122) 조경 담장 조경석 쌓기 사이로 토사 유출		보수비			9,757,812					9,757,812
공용123) 조경수 고사		보수비				102,740,583				102,740,583
공용124) 조경수 미식재		보수비	177,828,030							177,828,030
공용125) 조경수 뿌리분 고부 및 철선 미제거		보수비				148,951				148,951
공용126) 조경수 절단										-
공용127) 조경수 조경토 넘침		보수비				1,624,202				1,624,202
공용128) 투시형 경계 담장 변형		보수비			210,635					210,635
공용129) 101동 윗편 대지 침하(다짐불량)		보수비				3,646,155				3,646,155

공용130) 보도블록변색 (수분흡수)										-
공용131) 보도 턱낮춤 누락		보수비		1,419,686						1,419,686
공용132) 보도 평탄 불량		보수비				1,068,760				1,068,760
공용133) 보도블럭 오염		보수비				906,903				906,903
공용134) 보차도 경계석 균열										-
공용135) 보차도 경계석 단차 발생		보수비		709,831						709,831
공용136) 보차도 경계석 파손		보수비				4,479,889				4,479,889
공용137) 보차도 구간 보차도 블록 파손(주로황색블록)		보수비				1,557,644				1,557,644
공용138) 아스콘 포장 균열		보수비				1,726,266				1,726,266
공용139) 아스콘 포장 침하		보수비				17,733,303				17,733,303
공용140) 옹벽 배수공 간격 파다		보수비		184,275						184,275
공용141) 옹벽 수축줄눈 누락		보수비	1,324,973							1,324,973
공용142) 옹벽 신축이음 시공불량(코킹제가 아닌 합판제움)		보수비		255,174						255,174

공용143) 외곽 방음벽 일반못 시공으로 인한 방부목 변색		보수비			733,188					733,188
공용144) 일반 주차구획 가장자리 부분 폭 미달(거의 모든구간)		보수비		3,673,421						3,673,421
공용145) 장애인 주차구획 주차폭 미달(거의 모든구간)		보수비		3,052,150						3,052,150
공용146) 주출입구 옆 1층 세대 전실 출입부분 보도블럭 오염		보수비				2,474,851				2,474,851
공용147) 103동 앞 맨홀 및 집수정 미시공		보수비	386,696							386,696
공용148) 오수 맨홀 일부 미시공		보수비	1,403,040							1,403,040
공용149) 우수 맨홀 일부 미시공		보수비	1,683,650							1,683,650
공용150) 우수 빗물받이 일부 미시공		보수비	5,146,871							5,146,871
공용151) 지붕 트러스 브레이싱 누락(전체의 약 50%)		보수비	1,127,912							1,127,912
공용152) 지하기제설 급수펌프 드레인용 트렌치가지 미시공										-
공용153) 지하기제설 급수펌프 방진가대 미시공		보수비	277,087							277,087
공용154) 지하 발전기실 엔진쿨러 LEVEL GAUGE 누락		보수비	276,101							276,101
공용155) 지하 발전기실 바닥 트렌치 미시공		보수비	1,023,536							1,023,536

공용169) EV승강로 내부 벽체 철물 미제거		차액	4,607,451							4,607,451
공용170) 동피트 바다 몰탈 두께 부족(T50-T30)										-
공용171) 동피트 천정 암면스프레이 두께 부족 (T20-T10)										-
공용172) 지하전기실 전력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을 1개의 트레이에 함께 배선										-
공용173) 각 동 입상배관 드레인 설치불량 (트렌치까지 연결안됨)		보수비	5,686,364							5,686,364
공용174) 천정 배관과 행거 접촉 부의 부식 방지용 인서트 누락										-
공용175) 집수정 펌프 설치부위 차량 충돌우려		보수비		1,851,300						1,851,300
공용176) 천정 사각 폴박스에 원형커버 사용, 틈새발생		보수비		4,034,837						4,034,837
공용177) 1층 세대 발코니 하부 우수연결관 보온 누락		보수비	582,186							582,186
공용추가1) 아파트 계단실 벽체 및 천정 미장두께 부족		차액		282,767,749						282,767,749
공용추가2) 부대시설 화재감지기 배선 시공불량 하자		보수비	225,296							225,296
공용추가3) 지하저수조 설치높이 오시공 하자		차액		5,200,608						5,200,608
공용추가4) 단지내 분전반함 도면보관대 및 결선도		보수비	1,288,760							1,288,760

미비처하자										
공용추가5) 지하층 배수펌프 주위배관에 방진이음 미시공 하자										-
공용추가6) 동지하 퍼트내 오배수관에 소재구 시공누락하자		보수비	4,975,045							4,975,045
공용추가7) 단지내 케이블트레이에 선명찰 시공누락하자		보수비	580,055							580,055
공용추가8) 관리동 급수 감압밸브 오시공 하자		보수비	342,043							342,043
공용추가9) 각동 입상퍼트내 층간 방화구획 시공불량 하자										-
공용추가10)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덕트 마감도장 미시공 하자		보수비	1,899,342							1,899,342
공용추가11) 지하저수조 주위배관 오시공 하자										-
공용추가12) 각동 전실 계연급기구 규격 오시공 하자		차액		1,532,653						1,532,653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2-2)
전유부분

[단위 : 원]

[illegible]

	균열/누수균열										
-	5.10년차 하자	중요	보수비							2,445,529	2,445,529
전유2	발코니 곰팡이		보수비			1,941,912					1,941,912
전유3	최상층 세대 천정 누수	중요	보수비					2,811,809			2,811,809
전유4	마루돌뜸		보수비			3,456,877					3,456,877
전유5	천정 도배지 돌뜸 및 변형		보수비			1,243,623					1,243,623
전유6	벽지 돌뜸 및 변형		보수비			988,314					988,314
전유7	바닥 타일 돌뜸		보수비			26,010,896					26,010,896
전유8	외부 창호 설치로 인한 물끊기 흠함물		보수비		13,300,059						13,300,059
전유9	겨울변색		보수비			28,096,345					28,096,345
전유10	목문 경첩 녹발생		보수비			3,516,572					3,516,572
전유11	세면대 실리콘 처리 누락		보수비	7,683,456							7,683,456
전유12	목조천정틀		보수비		30,293,670						30,293,670

	달대 간격 @450 간격 준수 불량										
전유13	욕조 천정을 달대받이 시공 누락		차액		2,279,904						2,279,904
전유14	바닥 타일 구매불량 (배수불량)		보수비		5,106,217						5,106,217
전유15	부부욕실 바닥 신발 걸림		보수비		7,558,720						7,558,720
전유16	26평형 부부욕실 PD벽체 미장 마감 누락										-
전유17	싱크대 수납장 문짝 단침 불량		보수비			2,289,275					2,289,275
전유18	싱크대 하부 마감 누락		차액	39,684,822							39,684,822
전유19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 보온재 누락										-
전유20	목문 상하마구리 래핑 누락		보수비	8,127,668							8,127,668
전유21	천정 도배지 들뜸 및 변형										-
전유22	벽지 들뜸 및 변형										-
전유23	바닥 장판지 변형		보수비			1,761,185					1,761,185
전유24	공사용		차액		7,857,992						7,857,992

[illegible]

	부족(180-135)										
전유34	층간소음에 대한 34평형 슬래브 두께 부족(180-150)										-
추가1	단위세대 욕실 전등배선 시공불량하자										-
추가2	단위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관보온 두께 오시공 하자		차액		45,367,752						45,367,752
추가3	단위세대 보일러 하부배관 관보온 두께 오시공하자		차액		2,523,378						2,523,378
추가4	단위세대 급수배관 관보온 두께 오시공 하자		차액		1,902,912						1,902,912
추가5	단위세대 수도계량기함 보온재 시공불량 하자		차액		11,583,528						11,583,528

별지 3. 동의세대 집계표

[단위:원]

구 분	사용 검사전		사용 검사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하자	2년차하자	3년차하자	5년차하자	10년차하자	
101동								
101호	52,860	116,534	52,464	204,692	-	33,418	-	459,968
102호	52,860	116,534	46,785	-	30,820	21,861	-	268,860
1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202호	52,860	95,994	99,305	-	-	18,217	-	266,376
203호	52,860	116,534	39,363	-	-	-	-	208,757
204호	52,860	95,994	34,163	-	-	-	-	183,017
301호	52,860	116,534	71,184	-	-	-	-	240,578
302호	52,860	95,994	51,251	-	-	-	-	200,105
303호	52,860	116,534	258,686	-	-	-	-	428,080
3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402호	52,860	116,534	235,028	102,344	23,919	-	26,488	557,173
403호	52,860	95,994	154,805	-	-	-	-	303,659
501호	52,860	95,994	25,620	102,344	-	-	-	276,818
5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504호	52,860	116,534	116,521	-	-	-	-	285,915
601호	52,860	116,534	68,957	-	-	-	-	238,351
602호	52,860	169,224	134,399	-	-	-	-	356,483
603호	52,860	95,994	8,871	-	-	-	-	157,725
604호	52,860	116,534	243,824	-	-	-	-	413,218
701호	52,860	116,534	48,017	26,800	-	31,150	13,812	289,173
703호	52,860	95,994	167,586	-	-	-	-	316,440
704호	52,860	95,994	486,369	-	23,919	79,670	24,184	762,996
802호	52,860	95,994	148,284	142,577	-	-	23,032	462,747
804호	52,860	95,994	70,088	204,692	-	-	-	423,634
903호	52,860	116,534	105,037	102,344	-	32,794	-	409,569
9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01호	52,860	95,994	101,812	102,344	-	-	-	353,010
1002호	52,860	95,994	272,710	204,692	-	-	-	626,256
1003호	52,860	95,994	113,233	102,344	-	-	-	364,431
1103호	52,860	95,994	86,729	26,800	16,120	-	-	278,503
1104호	52,860	95,994	121,339	102,344	-	12,142	-	384,679
1201호	52,860	95,994	154,126	-	-	-	-	302,980
1202호	52,860	116,534	-	102,344	23,919	-	-	295,657
1203호	52,860	95,994	31,623	-	-	-	-	180,477
1204호	52,860	95,994	96,146	102,344	-	-	-	347,344

1301호	52,860	116,534	45,297	-	-	-	-	214,691
13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1303호	52,860	116,534	71,719	204,692	-	-	-	445,805
1304호	52,860	95,994	25,620	102,344	-	-	-	276,818
14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402호	52,860	95,994	254,724	-	-	14,315	-	417,893
1403호	52,860	224,151	25,298	231,492	-	-	-	533,801
1404호	52,860	95,994	73,772	102,344	-	-	-	324,970
1501호	52,860	95,994	-	-	23,919	-	-	172,773
15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15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1504호	52,860	116,534	174,353	102,344	-	-	-	446,091
1602호	52,860	95,994	124,587	-	-	-	-	273,441
1603호	52,860	95,994	60,659	102,344	-	-	-	311,857
16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701호	52,860	116,534	115,065	-	-	-	3,448	287,907
1702호	52,860	116,534	189,238	244,925	-	-	-	603,557
17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2호	52,860	95,994	135,530	-	-	-	-	284,384
1901호	52,860	116,534	71,184	204,692	-	-	-	445,270
1904호	52,860	169,224	45,555	102,344	-	-	-	369,983

2001호	52,860	95,994	75,653	-	-	-	-	224,507
101동 소계	3,065,880	6,211,989	5,132,579	3,026,526	142,616	243,567	90,964	17,914,121
102동								
1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4호	45,611	69,879	175,625	-	-	-	-	291,115
201호	45,611	69,879	42,687	-	23,919	-	-	182,096
2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3호	45,611	90,419	53,840	-	-	-	-	189,870
304호	45,611	90,419	168,266	-	-	4,851	-	309,147
402호	45,611	90,419	73,772	-	-	-	-	209,802
501호	45,611	90,419	85,750	102,344	-	-	-	324,124
502호	45,611	90,419	82,600	-	-	-	-	218,630
503호	45,611	90,419	42,706	-	-	-	-	178,736
5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601호	45,611	69,879	65,487	142,577	-	-	-	323,554
602호	45,611	69,879	83,523	-	-	-	-	199,013
603호	45,611	90,419	56,945	-	-	-	-	192,975
604호	45,611	90,419	-	102,344	-	-	-	238,374
7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703호	45,611	90,419	157,477	-	-	-	-	293,507
801호	45,611	143,109	104,850	102,344	-	-	-	395,914
802호	45,611	90,419	92,237	-	-	-	-	228,267
8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901호	45,611	90,419	113,007	-	-	-	-	249,037
903호	45,611	108,723	74,703	204,692	24,184	-	-	457,913
904호	45,611	69,879	39,363	-	-	-	-	154,853
1001호	45,611	69,879	76,879	-	-	-	-	192,369
10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04호	45,611	90,419	133,726	-	-	-	-	269,756
1101호	45,611	69,879	76,879	-	-	-	-	192,369
1104호	45,611	90,419	6,317	-	-	-	-	142,347
12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202호	45,611	90,419	59,792	-	-	-	-	195,822
1203호	45,611	90,419	42,706	-	-	14,571	-	193,307
1204호	45,611	97,333	11,382	-	-	-	-	154,326
1301호	45,611	90,419	76,879	-	-	-	-	212,909
13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3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4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403호	45,611	90,419	113,523	-	-	-	-	249,553

15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601호	45,611	124,799	111,447	-	-	-	-	281,857
1603호	45,611	90,419	89,576	-	-	-	-	225,606
1604호	45,611	69,879	83,196	-	-	-	-	198,686
1701호	45,611	69,879	104,307	-	-	-	-	219,797
1702호	45,611	90,419	96,486	-	-	-	-	232,516
1704호	45,611	90,419	167,582	-	-	19,430	18,423	341,465
18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803호	45,611	69,879	118,156	-	-	-	-	233,646
1903호	45,611	69,879	105,427	-	-	-	-	220,917
2002호	45,611	90,419	84,975	40,233	-	-	-	261,238
2003호	45,611	69,879	57,030	204,692	-	-	-	377,212
2102호	45,611	124,799	76,649	-	-	-	3,448	250,507
2104호	45,611	90,419	140,393	204,692	-	-	-	481,115
102동 소계	2,417,383	4,404,835	3,346,145	1,103,918	48,103	38,852	21,871	11,381,107
103동								
102호	52,860	169,435	219,980	-	53,600	31,578	46,073	573,526
103호	52,860	133,060	103,505	-	-	-	-	289,425
104호	52,860	133,060	281,893	-	-	-	-	467,813
106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1호	52,860	95,994	-	102,344	-	-	-	251,198

203호	52,860	133,060	129,776	-	23,919	6,065	-	345,680
204호	52,860	133,060	-	-	-	-	-	185,920
206호	52,860	95,994	149,812	25,335	-	-	-	324,001
301호	52,860	116,534	11,382	-	-	-	-	180,776
302호	52,860	133,060	-	-	-	-	-	185,920
303호	52,860	133,060	91,522	204,692	23,919	-	-	506,053
304호	52,860	153,600	123,489	40,233	49,083	53,450	23,032	495,747
306호	52,860	171,454	134,580	-	-	-	-	358,894
401호	52,860	132,369	47,709	-	-	-	-	232,938
403호	52,860	169,435	99,155	-	23,919	-	-	345,369
404호	52,860	189,975	112,146	-	23,919	-	-	378,900
405호	52,860	189,975	194,422	-	-	-	-	437,257
406호	52,860	152,909	235,019	102,344	-	-	-	543,132
5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502호	52,860	133,060	-	-	-	-	-	185,920
503호	52,860	133,060	202,718	-	38,886	-	-	427,524
504호	52,860	133,060	65,366	-	-	-	-	251,286
505호	52,860	133,060	51,913	221,964	-	-	-	459,797
506호	52,860	152,909	88,340	-	-	-	-	294,109
601호	52,860	116,534	214,945	-	-	-	-	384,339
602호	52,860	133,060	603,753	26,800	59,359	44,301	-	920,133

6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604호	52,860	133,060	60,182	-	-	-	-	246,102
606호	52,860	152,909	57,656	204,692	-	-	-	468,117
702호	52,860	133,060	-	102,344	-	-	-	288,264
704호	52,860	133,060	103,482	102,344	-	-	-	391,746
706호	52,860	152,909	34,163	-	5,753	-	-	245,685
801호	52,860	169,224	20,082	26,800	-	-	-	268,966
802호	52,860	133,060	47,736	40,233	-	-	-	273,889
803호	52,860	133,060	84,465	102,344	-	-	-	372,729
804호	52,860	133,060	-	40,233	-	-	-	226,153
805호	52,860	153,600	141,696	-	-	-	-	348,156
806호	52,860	95,994	-	-	-	-	-	148,854
901호	52,860	169,224	106,952	-	-	18,454	-	347,490
902호	52,860	206,290	146,323	-	-	-	-	405,473
903호	52,860	206,290	114,705	-	17,272	-	5,753	396,880
904호	52,860	153,600	86,729	-	-	32,794	74,290	400,273
905호	52,860	153,600	147,093	-	-	-	-	353,553
906호	52,860	95,994	226,924	-	-	-	-	375,778
1001호	52,860	116,534	88,922	40,233	-	-	-	298,549
1002호	52,860	169,672	80,055	-	-	-	-	302,587
10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004호	52,860	153,600	175,899	-	-	-	-	382,359
1005호	52,860	133,060	163,519	-	23,919	30,366	-	403,724
1101호	52,860	95,994	19,924	102,344	-	-	-	271,122
1102호	52,860	206,290	80,465	102,344	-	-	-	441,959
1103호	52,860	133,060	68,663	102,344	23,919	-	-	380,846
1104호	52,860	206,290	34,491	102,344	-	-	-	395,985
1105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2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202호	52,860	178,825	25,620	40,233	23,919	-	-	321,457
1203호	52,860	153,600	59,792	-	-	-	-	266,252
1204호	52,860	153,600	25,620	-	-	-	-	232,080
1205호	52,860	169,672	146,447	102,344	-	-	-	471,323
1206호	52,860	95,994	-	-	-	-	-	148,854
1301호	52,860	116,534	31,059	-	-	-	-	200,453
1303호	52,860	133,060	138,423	-	-	-	-	324,343
1305호	52,860	153,600	68,663	-	-	-	-	275,123
1306호	52,860	95,994	51,377	102,344	-	-	-	302,575
1401호	52,860	116,534	-	-	-	-	-	169,394
1403호	52,860	153,600	67,049	-	-	32,794	-	306,303
1406호	52,860	116,534	131,237	-	-	-	-	300,631
1501호	52,860	95,994	88,781	142,577	-	-	-	380,212

1502호	52,860	133,060	110,129	-	-	-	-	296,049
15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504호	52,860	151,364	34,865	-	26,488	18,217	-	283,794
1506호	52,860	95,994	35,725	-	-	-	-	184,579
1601호	52,860	95,994	79,724	102,344	-	-	-	330,922
1602호	52,860	153,600	60,213	-	-	-	-	266,673
1605호	52,860	133,060	200,306	-	13,812	19,430	-	419,468
1606호	52,860	152,909	274,781	102,344	5,753	-	26,488	615,135
1701호	52,860	95,994	117,296	102,344	-	-	-	368,494
1702호	52,860	133,060	54,095	102,344	17,272	-	-	359,631
1704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705호	52,860	133,060	111,092	102,344	-	-	-	399,356
1706호	52,860	152,909	8,871	204,692	-	-	-	419,332
1802호	52,860	153,600	70,928	204,692	-	-	-	482,080
18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805호	52,860	133,060	173,469	-	23,919	-	-	383,308
1806호	52,860	152,909	21,515	-	23,919	-	-	251,203
1901호	52,860	95,994	94,030	204,692	-	-	-	447,576
1903호	52,860	133,060	116,917	102,344	13,812	-	-	418,993
1905호	52,860	133,060	53,258	204,692	-	-	-	443,870
2001호	52,860	114,298	77,934	204,692	-	-	-	449,784

2002호	52,860	133,060	88,595	102,344	-	-	-	376,859
2004호	52,860	153,600	54,426	-	-	-	-	260,886
2005호	52,860	133,060	95,638	102,344	23,032	-	-	406,934
2101호	52,860	132,369	226,882	102,344	-	-	-	514,455
2103호	52,860	189,975	34,163	-	-	-	-	276,998
2104호	52,860	189,975	248,238	102,344	17,272	-	17,272	627,961
2105호	52,860	189,975	113,653	102,344	-	-	-	458,832
2106호	52,860	152,909	80,482	-	-	-	-	286,251
103동 소개	5,127,420	13,571,437	8,722,844	4,329,053	556,665	287,449	192,908	32,787,776
104동								
504호	52,860	208,074	209,204	11,512	-	-	13,812	495,462
604호	52,860	116,534	101,430	-	-	-	-	270,824
7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704호	52,860	95,994	92,421	-	-	-	-	241,275
804호	52,860	95,994	82,535	-	-	-	-	231,389
903호	52,860	153,600	51,251	-	13,812	21,861	-	293,384
10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03호	52,860	187,980	79,724	102,344	-	-	-	422,908
1004호	52,860	116,534	40,367	40,233	-	-	-	249,994
1101호	52,860	95,994	259,639	-	5,753	38,953	23,032	476,231
1102호	52,860	153,600	111,918	102,344	14,967	-	-	435,689

1103호	52,860	153,600	113,556	204,692	-	32,794	-	557,502
1201호	52,860	95,994	88,189	-	-	6,065	-	243,108
1202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203호	52,860	153,600	79,724	-	-	-	-	286,184
1204호	52,860	116,534	255,189	-	17,272	-	-	441,855
1302호	52,860	153,600	97,474	-	-	-	-	303,934
1303호	52,860	153,600	206,028	-	-	-	-	412,488
1401호	52,860	132,606	8,533	102,344	-	-	-	296,343
1402호	52,860	187,980	100,576	-	-	-	-	341,416
1403호	52,860	133,060	82,625	-	23,032	-	-	291,577
1404호	52,860	116,534	151,312	-	-	-	-	320,706
1501호	52,860	95,994	70,418	-	23,919	-	-	243,191
1502호	52,860	133,060	78,186	102,344	-	-	-	366,450
1503호	52,860	171,904	98,460	-	-	-	-	323,224
15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601호	52,860	150,914	230,348	-	-	-	-	434,122
1602호	52,860	133,060	316,474	102,344	-	12,142	-	616,880
1603호	52,860	151,364	71,184	-	-	-	-	275,408
1604호	52,860	116,534	79,724	-	-	-	-	249,118
1702호	52,860	153,600	72,489	-	-	-	-	278,949
17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2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804호	52,860	95,994	12,644	204,692	-	-	-	366,190
1902호	52,860	153,600	139,664	-	-	18,217	-	364,341
1904호	52,860	132,606	199,796	13,812	10,359	-	39,160	448,593
20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2002호	52,860	133,060	-	-	-	-	-	185,920
2101호	52,860	95,994	-	102,344	20,727	40,082	27,637	339,644
2102호	52,860	133,060	142,440	-	-	-	-	328,360
2103호	52,860	171,904	90,704	-	-	-	-	315,468
2201호	52,860	95,994	119,836	-	23,919	-	-	292,609
2202호	52,860	116,534	161,258	102,344	-	-	-	432,996
2301호	52,860	134,838	131,721	-	-	-	-	319,419
2302호	52,860	95,994	106,165	-	58,587	-	-	313,606
104동 소재	2,378,700	5,870,576	4,333,206	1,191,349	212,347	170,114	103,641	14,259,933
105동								
101호	45,611	69,879	260,047	-	-	-	-	375,537
103호	45,611	106,491	69,202	-	-	-	-	221,304
2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2호	45,611	90,419	105,983	-	-	-	-	242,013
301호	45,611	108,723	-	204,692	-	-	-	359,026
403호	45,611	90,419	126,777	-	-	-	-	262,807

404호	45,611	69,879	43,136	-	-	-	-	158,626
501호	45,611	90,419	11,382	204,692	-	-	-	352,104
503호	45,611	69,879	152,268	102,344	-	-	-	370,102
601호	45,611	90,419	39,113	-	28,790	6,065	-	209,998
602호	45,611	90,419	224,339	-	13,812	-	-	374,181
603호	45,611	69,879	45,555	102,344	17,272	-	-	280,661
604호	45,611	69,879	32,368	102,344	36,854	2,423	42,611	332,090
802호	45,611	123,590	100,488	102,344	-	-	-	372,033
804호	45,611	121,354	102,240	102,344	47,847	-	-	419,396
9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903호	45,611	123,590	21,165	-	23,919	-	-	214,285
904호	45,611	103,050	28,057	102,344	47,847	-	-	326,909
1003호	45,611	103,050	112,934	102,344	13,812	-	-	377,751
1103호	45,611	85,416	47,842	-	-	-	-	178,869
1202호	45,611	69,879	84,663	-	23,919	-	-	224,072
1204호	45,611	123,590	86,629	102,344	23,919	-	-	382,093
13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302호	45,611	69,879	87,291	-	-	-	-	202,781
13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304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404호	45,611	123,590	65,430	-	44,919	24,291	13,812	317,653

1503호	45,611	90,419	99,958	-	-	-	-	235,988
1504호	45,611	103,050	122,878	-	39,160	6,065	11,512	328,276
1603호	45,611	69,879	40,289	102,344	-	-	-	258,123
1604호	45,611	103,050	134,051	-	-	49,060	-	331,772
1703호	45,611	103,050	117,167	-	17,272	6,065	23,032	312,197
1704호	45,611	103,050	34,340	102,344	40,311	-	17,272	342,928
1903호	45,611	103,050	34,709	5,753	108,880	-	-	298,003
1904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3호	45,611	123,590	72,656	-	4,600	4,851	5,753	257,061
2103호	45,611	103,050	95,272	102,344	-	-	-	346,277
105동 소계	1,687,607	3,451,496	2,598,229	1,540,921	533,133	98,820	113,992	10,024,198
106동								
102호	45,611	108,723	85,750	6,901	-	-	-	246,985
103호	45,611	108,723	76,879	204,692	-	-	-	435,905
203호	45,611	69,879	123,940	204,692	17,272	14,571	-	475,965
302호	45,611	69,879	327,279	102,344	-	6,065	-	551,178
3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401호	45,611	69,879	125,862	-	-	22,146	-	263,498
501호	45,611	69,879	40,480	102,344	-	-	-	258,314
504호	45,611	163,649	115,871	-	41,191	6,065	-	372,387
603호	45,611	124,799	116,242	204,692	-	-	-	491,344

803호	45,611	106,491	67,348	102,344	-	26,722	-	348,516
901호	45,611	69,879	-	204,692	17,272	18,454	-	355,908
902호	45,611	69,879	60,514	204,692	-	-	-	380,696
9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904호	45,611	90,419	40,188	102,344	-	8,496	-	287,058
1103호	45,611	90,419	141,625	-	27,637	36,440	-	341,732
1201호	45,611	90,419	76,879	-	-	-	-	212,909
1204호	45,611	90,419	37,009	-	-	-	-	173,039
1302호	45,611	90,419	26,283	204,692	17,272	40,082	-	424,359
13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402호	45,611	90,419	58,252	102,344	-	-	-	296,626
14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501호	45,611	69,879	25,620	102,344	-	-	-	243,454
15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503호	45,611	90,419	131,404	204,692	17,272	35,224	-	524,622
1504호	45,611	90,419	129,031	102,344	77,980	62,518	-	507,903
1602호	45,611	108,723	225,310	102,344	34,552	-	-	516,540
17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704호	45,611	90,419	180,757	102,344	6,901	3,637	12,662	442,331
18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803호	45,611	90,419	138,196	204,692	-	-	-	478,918

1804호	45,611	127,031	120,263	-	-	-	-	292,905
1901호	45,611	90,419	92,092	204,692	-	-	-	432,814
20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4호	45,611	90,419	67,920	204,692	59,621	-	-	468,263
2102호	45,611	69,879	7,401	244,925	-	-	31,095	398,911
2103호	45,611	69,879	44,382	204,692	-	17,003	-	381,567
2104호	45,611	90,419	119,008	102,344	-	-	-	357,382
106동 소개	1,733,218	3,281,408	2,801,785	3,526,878	316,970	297,423	43,757	12,001,439
107동								
105호	45,611	69,879	22,773	-	23,919	-	-	162,182
106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2호	45,611	90,419	103,040	102,344	17,272	29,150	-	387,836
203호	45,611	90,419	360,635	-	-	-	-	496,665
204호	45,611	90,419	140,878	102,344	-	57,093	-	436,345
206호	45,611	69,879	37,009	102,344	-	-	-	254,843
3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302호	45,611	90,419	236,956	204,692	11,512	37,654	49,523	676,367
3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6호	45,611	90,419	-	-	-	-	-	136,030

307호	45,611	69,879	85,193	-	-	26,722	4,600	232,005
308호	45,611	90,419	79,469	-	-	-	-	215,499
401호	45,611	90,419	54,095	-	-	21,861	-	211,986
403호	45,611	90,419	321,722	-	-	-	-	457,752
406호	45,611	69,879	-	-	-	-	-	115,490
501호	45,611	123,590	41,302	102,344	-	25,506	-	338,353
5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601호	45,611	103,050	199,027	204,692	-	-	-	552,380
602호	45,611	123,590	247,178	204,692	-	-	-	621,071
605호	45,611	127,031	48,237	102,344	-	-	13,812	337,035
702호	45,611	103,050	125,963	102,344	-	-	-	376,968
703호	45,611	123,590	342,925	-	27,637	11,067	-	550,830
704호	45,611	90,419	11,382	102,344	-	-	-	249,756
801호	45,611	103,050	224,017	-	-	18,217	-	390,895
802호	45,611	90,419	45,555	204,692	-	-	-	386,277
8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806호	45,611	88,183	78,973	204,692	-	-	-	417,459
808호	45,611	69,879	60,056	102,344	-	-	-	277,890
901호	45,611	123,590	203,606	-	-	-	-	372,807
902호	45,611	123,590	202,574	-	13,812	14,571	-	400,158
904호	45,611	90,419	57,994	-	17,272	25,506	59,431	296,233

906호	45,611	69,879	25,620	102,344	-	-	-	243,454
907호	45,611	90,419	86,926	-	-	12,142	24,184	259,282
908호	45,611	69,879	111,723	102,344	23,032	20,647	43,766	417,002
1002호	45,611	123,590	80,372	102,344	-	-	-	351,917
1004호	45,611	108,723	124,060	102,344	-	-	-	380,738
1005호	45,611	90,419	11,382	102,344	-	-	-	249,756
1006호	45,611	90,419	345,940	-	17,272	58,309	-	557,551
1008호	45,611	123,590	51,770	-	-	6,065	-	227,036
1102호	45,611	141,894	234,676	-	5,753	13,356	-	441,290
1103호	45,611	90,419	71,770	40,233	25,335	4,851	-	278,219
11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105호	45,611	123,590	81,537	-	-	-	-	250,738
1107호	45,611	69,879	135,500	204,692	19,574	6,065	-	481,321
1108호	45,611	69,879	43,034	40,233	-	-	-	198,757
1201호	45,611	123,590	130,069	102,344	3,448	12,142	-	417,204
1203호	45,611	90,419	63,571	102,344	-	-	-	301,945
1204호	45,611	69,879	29,090	204,692	-	-	-	349,272
1205호	45,611	69,879	37,009	204,692	-	-	-	357,191
1207호	45,611	90,419	154,935	204,692	23,919	8,496	-	528,072
1208호	45,611	123,590	196,267	-	25,335	8,496	-	399,299
1303호	45,611	90,419	111,418	102,344	-	83,314	-	433,106

1304호	45,611	69,879	67,418	-	-	-	-	182,908
1305호	45,611	139,662	101,901	142,577	13,812	12,142	71,537	527,242
1306호	45,611	90,419	59,792	-	-	-	-	195,822
1307호	45,611	69,879	-	-	-	-	-	115,490
1308호	45,611	69,879	-	-	-	-	-	115,490
1404호	45,611	123,590	108,240	102,344	39,917	54,662	-	474,364
1405호	45,611	103,050	25,620	-	-	-	-	174,281
1406호	45,611	90,419	22,773	-	-	12,142	-	170,945
1407호	45,611	90,419	47,809	102,344	-	26,722	-	312,905
1408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503호	45,611	90,419	123,929	204,692	-	41,301	-	505,952
1505호	45,611	69,879	188,534	102,344	-	58,309	-	464,677
1506호	45,611	90,419	25,620	204,692	-	-	-	366,342
1507호	45,611	123,590	11,382	204,692	-	-	-	385,275
1508호	45,611	69,879	-	-	-	-	-	115,490
1604호	45,611	103,050	196,769	102,344	12,662	-	-	460,436
1605호	45,611	90,419	68,335	102,344	-	-	-	306,709
1606호	45,611	90,419	110,132	-	-	-	-	246,162
1607호	45,611	90,419	75,768	102,344	5,753	36,440	-	356,335
1608호	45,611	121,354	66,151	-	45,796	-	-	278,912
1703호	45,611	69,879	175,999	102,344	13,812	-	-	407,645

1704호	45,611	90,419	48,401	102,344	-	-	-	286,775
1705호	45,611	69,879	-	102,344	5,753	18,217	-	241,804
1706호	45,611	69,879	-	-	-	-	-	115,490
1707호	45,611	69,879	-	-	-	-	-	115,490
1708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802호	45,611	106,491	22,617	-	-	4,851	21,877	201,447
1803호	45,611	103,050	19,924	204,692	-	-	-	373,277
1804호	45,611	90,419	107,938	204,692	83,806	-	6,901	539,367
1805호	45,611	90,419	25,620	142,577	17,272	-	5,753	327,252
1806호	45,611	69,879	-	-	-	-	-	115,490
1807호	45,611	69,879	8,314	-	23,919	-	-	147,723
1808호	45,611	123,590	127,828	-	-	-	-	297,029
1904호	45,611	90,419	92,820	102,344	47,175	14,571	-	392,940
1906호	45,611	141,894	56,945	102,344	3,448	-	4,600	354,842
1908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5호	45,611	90,419	65,487	102,344	9,208	6,065	8,056	327,190
2006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8호	45,611	103,050	22,773	-	2,296	-	-	173,730
21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2105호	45,611	90,419	45,555	142,577	-	-	-	324,162
2202호	45,611	90,419	155,468	-	36,854	12,142	194,674	535,168

2206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7동 소계	4,378,656	8,931,870	7,733,090	6,239,517	616,575	798,794	508,714	29,207,216
108동								
1303호	52,860	95,994	87,912	204,692	13,812	-	-	455,270
1402호	52,860	152,909	278,471	102,344	4,600	4,851	-	596,035
1404호	52,860	132,369	89,247	-	-	8,496	-	282,972
1502호	52,860	134,838	164,584	102,344	-	-	-	454,626
1504호	52,860	116,534	48,129	102,344	23,919	-	-	343,786
16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1603호	52,860	134,838	125,158	102,344	-	-	-	415,200
1604호	52,860	95,994	184,072	102,344	-	-	-	435,270
1703호	52,860	95,994	68,335	-	-	-	-	217,189
17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2호	52,860	95,994	136,748	-	-	-	-	285,602
1803호	52,860	116,534	235,623	102,344	31,095	-	11,512	549,968
1901호	52,860	152,909	11,382	-	-	-	-	217,151
19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19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904호	52,860	116,534	106,017	102,344	-	-	-	377,755
2001호	52,860	132,369	34,163	102,344	-	-	-	321,736
2002호	52,860	95,994	79,724	204,692	-	-	-	433,270

2003호	52,860	116,534	62,640	102,344	-	-	-	334,378
2004호	52,860	95,994	96,314	-	-	-	-	245,168
21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2103호	52,860	152,909	68,335	-	-	-	-	274,104
2204호	52,860	153,146	79,724	102,344	-	-	-	388,074
2303호	52,860	116,534	108,630	102,344	10,359	-	27,637	418,364
2304호	52,860	116,534	278,794	204,692	-	19,430	-	672,310
108동 소계	1,321,500	2,937,800	2,344,002	1,739,860	83,785	32,777	39,149	8,498,873
109동								
101호	45,611	90,419	95,708	102,344	5,753	-	-	339,835
201호	45,611	69,879	107,698	204,692	-	-	-	427,880
304호	45,611	69,879	69,514	204,692	68,838	66,814	-	525,348
402호	45,611	90,419	74,699	204,692	-	-	-	415,421
404호	45,611	69,879	178,914	102,344	104,034	64,383	-	565,165
501호	45,611	90,419	73,041	204,692	68,838	37,654	-	520,255
601호	45,611	69,879	148,439	102,344	42,342	-	-	408,615
604호	45,611	69,879	275,656	102,344	10,359	19,430	-	523,279
701호	45,611	69,879	104,355	204,692	23,919	19,430	-	467,886
703호	45,611	90,419	111,949	102,344	-	-	-	350,323
801호	45,611	90,419	65,916	204,692	23,919	-	-	430,557
902호	45,611	69,879	295,278	204,692	19,574	3,637	47,663	686,334

9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01호	45,611	69,879	159,464	-	54,134	18,217	-	347,305
1102호	45,611	90,419	46,785	102,344	29,943	57,093	-	372,195
11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202호	45,611	90,419	132,231	102,344	-	-	-	370,605
1203호	45,611	90,419	48,401	204,692	34,552	52,233	5,753	481,661
1301호	45,611	90,419	27,500	-	52,709	10,927	-	227,166
1302호	45,611	90,419	97,567	102,344	40,311	-	23,032	399,284
1401호	45,611	69,879	48,401	102,344	24,184	107,708	-	398,127
1403호	45,611	69,879	42,706	204,692	-	-	-	362,888
15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502호	45,611	69,879	150,295	102,344	51,832	44,944	5,753	470,658
1503호	45,611	69,879	183,500	102,344	38,886	-	-	440,220
1702호	45,611	106,491	107,450	102,344	-	-	-	361,896
1801호	45,611	69,879	109,773	5,753	24,184	18,217	18,423	291,840
1802호	45,611	88,183	107,783	102,344	18,423	-	-	362,344
1803호	45,611	69,879	211,989	102,344	24,184	-	19,574	473,581
1901호	45,611	69,879	56,945	102,344	23,919	-	-	298,698
2001호	45,611	69,879	22,773	-	-	-	-	138,263
20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21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2102호	45,611	90,419	11,382	204,692	-	-	-	352,104
2103호	45,611	88,183	28,470	-	-	-	-	162,264
2104호	45,611	108,723	72,562	102,344	16,120	-	-	345,360
22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9동 소개	1,687,607	2,923,527	3,267,144	3,690,177	800,957	520,687	120,198	13,010,297
110동								
101호	52,860	132,369	143,188	-	-	-	-	328,417
1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3호	52,860	152,909	45,297	102,344	-	-	-	353,410
104호	52,860	114,298	104,251	129,144	-	-	-	400,553
201호	52,860	152,909	55,350	204,692	-	-	-	465,811
202호	52,860	132,369	98,691	26,800	-	-	-	310,720
203호	52,860	244,449	-	231,492	-	-	19,574	548,375
204호	52,860	152,909	135,008	231,492	28,790	-	-	601,059
301호	52,860	132,369	26,626	-	-	-	-	211,855
3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4호	52,860	132,369	85,276	102,344	-	-	-	372,849
4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2호	52,860	152,909	154,601	-	17,272	-	-	377,642
403호	52,860	171,213	227,892	102,344	23,032	72,889	-	650,230
5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2호	52,860	132,369	-	204,692	-	-	-	389,921
503호	52,860	152,909	22,617	102,344	-	-	-	330,730
5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3호	52,860	152,909	81,173	102,344	-	-	-	389,286
604호	52,860	171,213	50,407	-	42,342	-	-	316,822
701호	52,860	150,673	165,810	102,344	-	-	-	471,687
8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802호	52,860	152,909	75,943	102,344	65,119	-	31,095	480,270
8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901호	52,860	132,369	34,642	-	17,272	-	-	237,143
9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903호	52,860	116,534	198,197	204,692	-	-	-	572,283
9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01호	52,860	132,369	238,359	102,344	-	-	-	525,932
11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1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104호	52,860	95,994	50,189	102,344	-	8,496	-	309,883
1201호	52,860	132,369	63,973	102,344	-	-	-	351,546
12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2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12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301호	52,860	132,369	11,382	102,344	-	-	-	298,955
13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1303호	52,860	95,994	28,898	102,344	41,191	14,571	-	335,858
1304호	52,860	95,994	95,078	102,344	91,194	9,713	-	447,183
1401호	52,860	132,369	47,896	-	-	-	-	233,125
14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4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1501호	52,860	132,369	62,640	204,692	-	-	-	452,561
1502호	52,860	95,994	45,762	204,692	-	-	-	399,308
1601호	52,860	132,369	54,594	102,344	-	-	-	342,167
1603호	52,860	95,994	152,665	102,344	10,359	12,142	-	426,364
1701호	52,860	226,139	8,871	-	-	-	-	287,870
1702호	52,860	95,994	11,382	204,692	-	-	-	364,928
17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1호	52,860	132,369	145,028	204,692	-	-	25,335	560,284
1802호	52,860	152,909	37,009	-	47,847	-	-	290,625
1804호	52,860	116,534	65,514	204,692	47,847	17,003	23,032	527,482
1901호	52,860	152,909	153,480	-	17,272	-	-	376,521
1902호	52,860	95,994	-	-	-	-	-	148,854
1903호	52,860	153,146	-	204,692	-	80,284	-	490,982

1904호	52,860	116,534	96,501	204,692	-	-	-	470,587
2101호	52,860	132,369	45,555	102,344	-	-	-	333,128
2102호	52,860	95,994	190,229	204,692	-	-	5,753	549,528
2103호	52,860	95,994	37,009	204,692	-	-	-	390,555
2104호	52,860	95,994	33,861	204,692	17,272	-	23,032	427,711
110동 소계	3,277,320	8,030,406	3,380,844	4,917,428	466,809	215,098	127,821	20,415,726
111동								
102호	52,860	189,975	60,920	102,344	-	-	-	406,099
103호	52,860	169,435	55,350	102,344	-	-	-	379,989
104호	52,860	169,435	106,525	-	-	-	-	328,820
105호	52,860	169,435	-	-	-	-	-	222,295
106호	52,860	152,909	46,505	102,344	23,919	-	-	378,537
201호	52,860	189,517	171,943	102,344	-	-	-	516,664
202호	52,860	169,435	25,620	204,692	-	-	-	452,607
205호	52,860	189,975	167,594	102,344	-	-	-	512,773
206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2호	52,860	189,975	83,638	102,344	-	-	-	428,817
303호	52,860	189,975	69,048	-	-	-	-	311,883
304호	52,860	189,975	40,808	204,692	23,919	31,578	-	543,832
305호	52,860	189,975	112,723	-	-	-	-	355,558
306호	52,860	152,909	79,724	-	-	-	-	285,493

402호	52,860	187,739	34,163	102,344	-	-	-	377,106
404호	52,860	169,435	-	-	-	-	-	222,295
405호	52,860	169,435	-	-	-	-	-	222,295
406호	52,860	171,213	24,067	-	-	-	-	248,140
501호	52,860	152,909	172,829	102,344	-	-	-	480,942
502호	52,860	187,739	96,464	26,800	5,753	-	14,967	384,583
505호	52,860	169,435	75,411	102,344	-	-	24,809	424,859
506호	52,860	132,369	54,307	-	-	-	-	239,536
601호	52,860	152,909	137,790	102,344	-	-	-	445,903
602호	52,860	189,975	256,972	129,144	-	-	-	628,951
603호	52,860	189,975	88,595	102,344	23,919	-	-	457,693
604호	52,860	169,435	-	-	-	-	-	222,295
606호	52,860	152,909	75,053	-	-	-	-	280,822
702호	52,860	208,279	17,750	204,692	-	-	-	483,581
7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704호	52,860	153,600	-	-	-	-	-	206,460
705호	52,860	133,060	-	-	-	-	-	185,920
706호	52,860	152,909	165,158	102,344	-	-	-	473,271
801호	52,860	132,369	37,071	-	-	-	-	222,300
802호	52,860	189,975	25,298	102,344	16,120	23,074	13,812	423,483
803호	52,860	133,060	45,555	-	-	-	-	231,475

805호	52,860	133,060	99,401	-	-	-	-	285,321
806호	52,860	150,673	6,317	102,344	-	-	-	312,194
901호	52,860	152,909	70,088	129,144	47,847	34,012	-	486,860
902호	52,860	189,975	-	204,692	-	-	-	447,527
903호	52,860	169,435	45,555	102,344	-	28,642	-	398,836
904호	52,860	133,060	43,398	102,344	-	-	-	331,662
905호	52,860	133,060	125,404	102,344	-	-	-	413,668
906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03호	52,860	133,060	88,340	204,692	-	-	-	478,952
1006호	52,860	116,534	53,144	-	23,919	-	-	246,457
1101호	52,860	150,673	127,312	204,692	-	-	-	535,537
1102호	52,860	187,739	56,780	204,692	-	-	-	502,071
11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105호	52,860	153,600	73,827	40,233	-	-	-	320,520
1106호	52,860	116,534	184,382	-	-	-	-	353,776
1201호	52,860	152,909	131,928	204,692	-	-	-	542,389
1202호	52,860	169,435	98,826	102,344	5,753	-	-	429,218
1203호	52,860	153,600	112,608	-	-	-	-	319,068
1204호	52,860	153,600	79,724	142,577	-	21,861	-	450,622
1205호	52,860	153,600	72,441	-	-	-	-	278,901

1301호	52,860	152,909	8,871	102,344	-	-	-	316,984
1302호	52,860	133,060	134,029	102,344	5,753	-	-	428,046
1303호	52,860	190,208	34,163	102,344	-	103,262	-	482,837
1304호	52,860	153,600	62,966	204,692	-	-	-	474,118
1306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401호	52,860	132,369	51,251	204,692	37,731	-	-	478,903
14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1403호	52,860	133,060	41,114	-	-	-	-	227,034
1405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406호	52,860	95,994	-	-	-	-	-	148,854
1501호	52,860	171,213	149,939	-	-	-	-	374,012
1502호	52,860	189,975	102,118	-	37,731	57,292	-	439,976
1503호	52,860	153,600	79,724	102,344	-	9,713	-	398,241
1504호	52,860	153,600	-	-	-	-	-	206,460
1505호	52,860	153,600	79,724	102,344	3,448	-	-	391,976
1506호	52,860	116,534	287,643	-	-	-	-	457,037
16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602호	52,860	153,600	23,721	204,692	-	-	-	434,873
1603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606호	52,860	116,534	181,997	204,692	20,727	36,440	-	613,250
1701호	52,860	132,369	-	102,344	-	-	-	287,573

1702호	52,860	189,975	122,658	102,344	-	15,783	12,662	496,282
1704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705호	52,860	189,975	44,389	80,477	-	-	-	367,701
1706호	52,860	116,534	17,750	-	-	-	-	187,144
1801호	52,860	152,909	25,620	102,344	-	-	-	333,733
1804호	52,860	151,364	14,850	102,344	-	-	-	321,418
1805호	52,860	153,600	155,009	-	-	-	-	361,469
1901호	52,860	152,909	111,675	204,692	48,942	-	-	571,078
1903호	52,860	187,739	45,555	204,692	-	-	-	490,846
1904호	52,860	169,435	42,706	102,344	-	-	-	367,345
1905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906호	52,860	116,534	51,780	-	-	-	-	221,174
2001호	52,860	152,909	261,073	102,344	126,797	243,519	26,488	965,990
2002호	52,860	169,435	137,295	102,344	17,272	30,366	-	509,572
20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2004호	52,860	153,600	58,007	102,344	-	95,969	-	462,780
2005호	52,860	169,435	-	-	-	-	-	222,295
2006호	52,860	132,369	151,321	-	-	14,315	43,766	394,631
21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103호	52,860	133,060	53,980	204,692	-	-	-	444,592
2104호	52,860	189,975	82,528	-	-	-	-	325,363

2105호	52,860	189,975	128,224	102,344	-	-	-	473,403
2106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201호	52,860	152,909	59,792	-	-	-	-	265,561
2202호	52,860	189,975	123,688	102,344	-	-	-	468,867
2302호	52,860	132,369	25,620	-	-	-	-	210,849
111동 소계	5,444,580	16,021,758	6,747,136	6,996,107	469,550	745,826	136,504	36,561,461
총합계	32,519,871	75,637,102	50,407,004	38,301,734	4,247,510	3,449,407	1,499,519	206,062,147

별지 4. 미동의세대 집계표

[단위:원]

구 분	사용 검사전		사용 검사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하자	2년차하자	3년차하자	5년차하자	10년차하자	
101동								
401호	52,860	116,534	112,027	102,344	-	-	-	383,765
404호	52,860	116,534	106,223	102,344	65,119	-	-	443,080
503호	52,860	95,994	17,516	102,344	-	-	-	268,714
702호	52,860	95,994	71,590	102,344	-	-	-	322,788
803호	52,860	116,534	287,046	-	5,753	35,224	13,812	511,229
9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04호	52,860	95,994	95,638	204,692	-	-	-	449,184
16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703호	52,860	116,534	34,163	-	-	-	-	203,557
18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4호	52,860	116,534	374,134	204,692	-	-	-	748,220
2002호	52,860	169,224	100,934	204,692	-	-	-	527,710
102동								
1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4호	45,611	90,419	65,487	102,344	-	-	-	303,861
3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4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403호	45,611	115,644	28,795	-	-	-	-	190,050
7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8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304호	45,611	163,649	45,880	102,344	-	-	-	357,484
1402호	45,611	90,419	156,909	-	-	4,851	-	297,790
1404호	45,611	69,879	11,382	-	-	-	-	126,872
1501호	45,611	90,419	89,706	102,344	-	-	-	328,080
1502호	45,611	69,879	79,469	-	-	-	-	194,959
1504호	45,611	90,419	99,172	102,344	-	-	-	337,546
1602호	45,611	69,879	115,229	-	-	-	-	230,719
18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901호	45,611	90,419	66,109	102,344	-	-	-	304,483
1902호	45,611	69,879	85,750	102,344	-	6,065	57,016	366,665
19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4호	45,611	90,419	122,664	-	-	-	-	258,694
21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3동								
101호	52,860	95,994	111,246	102,344	23,919	-	-	386,363
105호	52,860	169,435	249,521	102,344	47,847	19,430	-	641,437
202호	52,860	133,060	-	-	-	-	-	185,920
305호	52,860	153,600	244,908	102,344	29,672	-	17,272	600,656
402호	52,860	133,060	11,382	-	-	-	-	197,302
1106호	52,860	116,534	180,082	-	23,919	37,884	72,555	483,834
1302호	52,860	187,980	76,405	-	23,919	6,065	-	347,229
1402호	52,860	153,600	98,482	-	-	-	-	304,942
1404호	52,860	153,600	186,931	-	-	-	13,812	407,203
1405호	52,860	133,060	-	-	-	-	-	185,920
1604호	52,860	133,060	133,655	40,233	-	-	-	359,808
1703호	52,860	133,060	69,429	-	-	-	-	255,349
18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4호	52,860	171,904	-	-	-	-	-	224,764
1902호	52,860	153,600	95,524	102,344	-	-	-	404,328
2006호	52,860	152,909	603,181	102,344	-	-	17,272	928,566
104동								
1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1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1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2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3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3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3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4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4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5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6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6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7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7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8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8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803호	52,860	153,600	34,163	-	17,272	-	13,812	271,707
9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9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904호	52,860	95,994	152,298	204,692	-	-	-	505,844
1002호	52,860	169,435	-	-	-	-	-	222,295
1104호	52,860	95,994	140,152	-	-	-	-	289,006
1301호	52,860	116,534	81,833	-	-	-	-	251,227
1701호	52,860	95,994	123,634	102,344	-	-	-	374,832
18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901호	52,860	95,994	153,233	102,344	-	-	-	404,431
1903호	52,860	151,364	154,572	-	26,488	-	-	385,284
2003호	52,860	226,824	147,749	40,233	-	-	-	467,666
2004호	52,860	95,994	8,533	110,400	23,919	-	-	291,706
2104호	52,860	95,994	82,893	-	-	-	-	231,747
105동								
1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401호	45,611	90,419	81,032	204,692	-	-	-	421,754
402호	45,611	90,419	227,370	129,144	-	-	-	492,544
504호	45,611	69,879	60,766	-	-	6,065	26,488	208,809
701호	45,611	90,419	39,363	102,344	-	-	-	277,737
7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7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801호	45,611	69,879	79,469	102,344	5,753	-	-	303,056
803호	45,611	123,590	229,289	102,344	11,512	-	-	512,346
902호	45,611	123,590	130,312	204,692	-	-	-	504,205
1002호	45,611	123,590	223,540	102,344	-	-	-	495,085
1004호	45,611	90,419	51,679	102,344	6,901	-	-	296,954
11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1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104호	45,611	123,590	44,387	204,692	78,309	6,065	-	502,654
12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4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4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403호	45,611	123,590	136,331	-	6,901	-	-	312,433
15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502호	45,611	69,879	83,220	-	11,512	-	43,766	253,988

16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6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7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7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8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8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8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804호	45,611	103,050	67,302	-	-	-	-	215,963
19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9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4호	45,611	160,202	70,007	-	-	-	-	275,820
21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4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22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4호	45,611	103,050	50,222	-	-	-	-	198,883
23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3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3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304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6호								
104호	45,611	108,723	34,163	204,692	23,919	13,356	-	430,464
201호	45,611	108,723	292,562	-	23,919	21,861	21,877	514,553
2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1호	45,611	90,419	36,721	204,692	-	-	5,753	383,196
402호	45,611	69,879	22,646	204,692	17,272	-	-	360,100
4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5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6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602호	45,611	69,879	39,846	204,692	-	-	-	360,028
6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701호	45,611	90,419	102,196	-	-	-	-	238,226
801호	45,611	90,419	48,979	102,344	23,919	-	-	311,272
804호	45,611	127,031	137,937	102,344	3,448	-	-	416,371
10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02호	45,611	90,419	84,053	102,344	-	-	-	322,427
1003호	45,611	90,419	84,007	102,344	-	31,578	-	353,959
1004호	45,611	108,723	109,012	102,344	-	-	8,056	373,746

11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104호	45,611	69,879	213,815	102,344	43,493	-	-	475,142
1202호	45,611	90,419	-	204,692	-	-	-	340,722
12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301호	45,611	106,491	37,009	40,233	-	6,065	-	235,409
1303호	45,611	90,419	155,614	102,344	-	-	-	393,988
1401호	45,611	172,793	56,020	102,344	13,812	10,927	-	401,507
16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604호	45,611	69,879	31,623	204,692	69,924	-	-	421,729
1701호	45,611	69,879	86,066	102,344	13,812	-	-	317,712
1703호	45,611	106,491	24,343	102,344	114,329	29,150	8,056	430,324
1801호	45,611	69,879	39,447	285,169	40,311	-	-	480,417
1902호	45,611	69,879	31,317	102,344	13,812	-	-	262,963
1903호	45,611	69,879	135,265	204,692	-	3,637	5,753	464,837
1904호	45,611	90,419	72,355	204,692	13,812	-	13,812	440,701
2001호	45,611	69,879	126,976	-	-	-	-	242,466
21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7동								
1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7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8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5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7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5호	45,611	69,879	96,883	102,344	-	15,783	17,272	347,772
402호	45,611	90,419	11,382	102,344	-	6,065	-	255,821
404호	45,611	90,419	205,131	-	-	-	-	341,161
405호	45,611	69,879	34,163	102,344	-	-	-	251,997
407호	45,611	69,879	104,355	102,344	13,812	35,224	-	371,225
502호	45,611	123,590	190,511	102,344	-	13,356	5,753	481,165
504호	45,611	90,419	374,946	102,344	-	23,074	8,056	644,450
505호	45,611	123,590	52,920	102,344	-	-	-	324,465
506호	45,611	69,879	20,253	102,344	13,812	13,356	-	265,255
507호	45,611	90,419	11,382	102,344	-	-	17,272	267,028
603호	45,611	123,590	194,901	102,344	-	18,217	-	484,663
604호	45,611	90,419	124,608	-	-	14,571	33,399	308,608
606호	45,611	90,419	45,555	102,344	-	6,065	13,812	303,806
607호	45,611	90,419	78,301	204,692	18,423	37,654	5,753	480,853
608호	45,611	103,050	-	-	-	-	-	148,661

701호	45,611	103,050	29,090	102,344	-	-	-	280,095
705호	45,611	69,879	-	-	-	-	-	115,490
706호	45,611	69,879	11,382	-	-	-	5,753	132,625
8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9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01호	45,611	123,590	83,196	-	-	-	-	252,397
10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007호	45,611	69,879	-	-	-	-	-	115,490
11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106호	45,611	69,879	-	-	-	-	-	115,490
1206호	45,611	69,879	267,123	-	14,967	14,571	5,753	417,904
1301호	45,611	103,050	111,845	204,692	23,919	7,284	-	496,401
1302호	45,611	123,590	74,103	102,344	-	26,722	-	372,370
14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4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4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5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5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504호	45,611	90,419	54,759	204,692	-	83,822	-	479,303
16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6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16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17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7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8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9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9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9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907호	45,611	103,050	133,161	-	-	-	-	281,822
20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6호	45,611	69,879	11,382	102,344	10,359	-	-	239,575
2107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108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3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4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205호	45,611	103,050	-	-	-	-	-	148,661

108호								
1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3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5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6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7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7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7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7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8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8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8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8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9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9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9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9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1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1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1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1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2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2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2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2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3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3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3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4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403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5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503호	52,860	95,994	150,853	102,344	-	-	-	402,051
16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701호	52,860	95,994	205,812	-	-	53,450	-	408,116
1801호	52,860	95,994	-	-	-	-	-	148,854
1804호	52,860	95,994	25,620	204,692	23,919	-	-	403,085
2101호	52,860	150,673	90,952	102,344	-	-	-	396,829
21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2203호	52,860	95,994	-	-	-	-	-	148,854

109동								
103호	45,611	90,419	61,426	102,344	23,919	12,142	-	335,861
1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2호	45,611	103,050	-	-	-	-	-	148,661
203호	45,611	90,419	147,061	102,344	13,812	-	13,812	413,059
204호	45,611	161,413	122,762	-	-	-	-	329,786
301호	45,611	123,590	119,257	-	65,119	8,496	-	362,073
3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3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401호	45,611	103,050	-	-	-	-	-	148,661
403호	45,611	69,879	-	-	-	-	-	115,490
5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503호	45,611	69,879	50,272	102,344	46,951	70,456	-	385,513
5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602호	45,611	90,419	197,298	-	5,753	-	24,109	363,190
603호	45,611	90,419	-	-	-	-	-	136,030
704호	45,611	69,879	30,018	204,692	69,992	42,517	43,063	505,772
802호	45,611	69,879	7,401	-	-	-	-	122,891
803호	45,611	90,419	267,771	-	34,552	94,757	-	533,110
804호	45,611	90,419	25,620	102,344	24,184	-	-	288,178
901호	45,611	69,879	133,010	204,692	-	-	-	453,192

903호	45,611	69,879	231,011	102,344	23,032	12,142	-	484,019
1002호	45,611	90,419	352,398	129,144	21,877	29,150	19,574	688,173
1003호	45,611	127,031	199,539	102,344	69,111	14,571	76,862	635,069
1004호	45,611	69,879	96,038	-	76,490	14,571	-	302,589
1101호	45,611	90,419	321,773	102,344	36,581	-	-	596,728
1201호	45,611	69,879	135,772	102,344	23,919	12,142	-	389,667
1204호	45,611	90,419	34,163	204,692	18,423	19,430	-	412,738
1303호	45,611	69,879	8,533	102,344	-	-	27,637	254,004
1404호	45,611	90,419	157,711	-	43,544	-	-	337,285
1504호	45,611	69,879	18,967	244,925	-	-	-	379,382
1604호	45,611	69,879	182,896	102,344	-	-	-	400,730
1701호	45,611	69,879	-	-	-	-	-	115,490
1703호	45,611	90,419	11,382	102,344	-	-	-	249,756
17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1804호	45,611	69,879	42,706	-	19,574	-	18,423	196,193
1902호	45,611	69,879	31,317	121,918	-	15,783	-	284,508
1903호	45,611	69,879	193,602	102,344	-	-	-	411,436
1904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2004호	45,611	90,419	68,004	-	40,311	32,794	18,423	295,562
2202호	45,611	69,879	-	-	-	-	-	115,490

2203호	45,611	69,879	33,831	102,344	-	-	-	251,665
2301호	45,611	69,879	8,533	102,344	-	-	-	226,367
2303호	45,611	69,879	49,940	204,692	16,120	-	25,335	411,577
2304호	45,611	69,879	62,573	102,344	-	-	-	280,407
110호								
302호	52,860	132,369	-	-	-	-	-	185,229
404호	52,860	152,909	193,734	142,577	-	-	-	542,080
602호	52,860	132,369	2,722	102,344	-	-	-	290,295
702호	52,860	132,369	105,014	102,344	-	-	-	392,587
703호	52,860	95,994	331,307	204,692	84,437	-	-	769,290
704호	52,860	116,534	159,898	-	23,919	-	-	353,211
804호	52,860	132,369	-	-	-	-	-	185,229
1003호	52,860	95,994	17,516	-	53,862	-	11,512	231,744
1103호	52,860	95,994	68,434	204,692	33,399	21,861	-	477,240
1404호	52,860	95,994	43,821	204,692	-	-	-	397,367
1503호	52,860	116,534	29,132	204,692	-	-	-	403,218
1504호	52,860	95,994	-	-	-	-	-	148,854
1602호	52,860	168,981	103,847	142,577	5,753	14,571	-	488,589
1604호	52,860	95,994	115,744	102,344	4,600	-	23,032	394,574
1703호	52,860	95,994	80,919	204,692	23,919	-	-	458,384
1803호	52,860	95,994	39,930	204,692	-	-	-	393,476

2004호	52,860	116,534	28,795	204,692	47,847	-	-	450,728
111동								
1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2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204호	52,860	169,435	9,653	102,344	-	-	-	334,292
301호	52,860	152,909	64,983	-	61,928	63,168	25,335	421,183
401호	52,860	171,213	22,617	-	-	83,822	-	330,512
403호	52,860	169,435	34,163	102,344	-	-	-	358,802
503호	52,860	169,435	8,753	-	-	-	-	231,048
605호	52,860	169,435	-	-	-	-	-	222,295
701호	52,860	152,909	70,538	102,344	23,919	122,700	13,812	539,082
804호	52,860	153,600	88,386	102,344	-	-	-	397,190
1002호	52,860	189,975	40,246	204,692	17,272	-	-	505,045
1004호	52,860	153,600	80,683	204,692	-	-	-	491,835
1104호	52,860	187,739	8,533	102,344	-	-	-	351,476
1206호	52,860	132,369	53,154	-	-	43,731	4,600	286,714
1404호	52,860	189,975	59,792	-	-	-	-	302,627
1605호	52,860	206,047	102,601	-	-	-	-	361,508
1703호	52,860	208,279	-	-	-	-	-	261,139
1802호	52,860	190,208	203,053	204,692	14,967	128,774	26,488	821,042
1806호	52,860	95,994	114,763	102,344	44,919	-	-	410,880

1902호	52,860	133,060	196,196	102,344	17,272	-	-	501,732
2102호	52,860	169,435	6,317	-	-	-	-	228,612
2203호	52,860	169,435	-	-	-	-	-	222,295
2301호	52,860	132,369	-	-	-	-	-	185,229
합계	18,876,538	42,418,761	17,564,288	15,754,845	2,074,985	1,465,015	823,952	98,978,384